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15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8누637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1. A
	2. B
	3. C
	4. D
	원고들 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인천지방법원 2018. 8. 31. 선고 2017구합55071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2. 11.
판 결 선 고	2019. 1. 1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15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3. 3. 13.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 158,732,28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13,1616,89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서 7쪽 12행 '것인데,' 다음에 '비록 원고 A과 H 또는 I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'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서 8쪽 4행 '없다.' 다음에 '또한 E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.'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서 8쪽 6행 '이루어졌는데,' 다음에 '그 양도일도 같을 뿐만 아니라'를 추가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2-15

재판장 판사 여상훈

판사 견종철

판사 장철익